4.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

항 목	TYPE	SIZE	조건	서류 /EDI	작 성 요 령	작 성 예
① 신고자	A	40	M	공통	○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 - 관세사의 경우 : 신고자상호, 관세사성명기재 - 자가통관업체의 경우 : 신고자상호, 대표자성명기재 - 기타 개인의 경우 : 성명기재 ** 다만, 화주(당해 수출물품의 소유자) 또는완제품 공급자 직접신고로서 관세사 명의로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○○회사(주)관제사○○○으로 기재	사 최고봉 - (주)최신상사 최고봉 - 최고봉 - 최신상사(주) 관세사 최고봉
- 제출번호	AN	14	М	공통	 신고자 부호, 년도 및 신고서 작성 일련번호를 기재 신고자 부호는 통계부호표 참조 * 상호가 없는 기타(개인)의 경우에는 제출번호 기재 생략 	- 12345-04-0001230
② 수출대행자	AN	28	М	공통	O 수출대행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. ※ 수출대행자가 다수인 경우 ㅇㅇㅇ외 ㅇ명 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출대행자별로 분리하여 신고	- (주)다파라인터내셔 널
- (통관고유부호)	AN	15	С	공통	O 수출대행자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- 관세청장(세관장)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 를 기재	- 초일류 **1741204
- (일련번호)	AN	4	С	공통	O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자의 경우 국세 청에서 부여하는 해당사업장 일련번호	- 본사:0000. 지사:0001~(지사는 해당번호 기입)
- 수출자 구분	AN	1	M	공통	○ 아래 해당코드를 기재 - 수출대행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 : A -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: B - 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(원상태 공급을 포함한다)을 받아 수출한 경우 : C -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·지사 관계인 경우 : D	- A
- 수출화주	AN	28	M	공통	O 수출화주의 상호를 기재	- (주)초일류상사
- (주소)	AN	35	M	공통	O 수출화주의 상호를 기재	- 서울시 강남구 서초 동 333
- (대표자)	AN	12	M	공통	O 수출화주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	- 최일류

항 목	TYPE	SIZE	조건	서류 /EDI	작 성 요 령	작 성 예
- (통관고유부호)	AN	15	С	공통	O 수출화주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※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·외국인은 기재 생략	- 초일류**1741204
- (일련번호)	AN	4	С	공통	O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자의 경우 국세 청에서 부여하는 해당사업장 일련번호	- 본사:0000 지사:0001~(지시 해당번호 기입)
- (사업자등록번 호)	AN	13	С	공통	○ 수출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-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※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주민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(외국인의 경우)를 기재,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번호 앞자리에 "F"를 기재하고 13자("F" 포함) 이내로 기재	-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:112-21-66062 -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:701230-1645917 - 외국인으로 여권번호가 12345678901234 경우 :F1234567890123
- (소재지)	AN	3	M	공통	O 수출화주 소재지의 우편번호 앞 3자리 번 호를 기재	- 134
③ 제조자	AN	28	M	공통	O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상호를 기재	- (주)메이저상사
- (통관고유부호)	AN	15	M	공통	○ 관세청장(세관장)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- 국내제조자가 없는 수입물품, 반송물품, 제조자를 알 수 없는 시중구매물품, 제조 자 다수 등으로 제조자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조자 상호를 "미상"으로 하고 통관고유부호는 "제조미상9999000"으로 기재	- 메이저 **1741204
- (일련번호)	AN	4	С	공통	O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자의 경우 국세 청에서 부여하는 해당사업장 일련번호	- 본사:0000, 지사:0001~(지시 해당번호 기입)
제조장소	AN	3	М	공통	○ 수출물품 제조장소(공장)의 우편번호 앞 3 자리 번호를 기재. 다만, 제조자가 미상인 경우에는 수출화주 소재지 우편번호 앞 3 자리 기재	- 134

항 목	TYPE	SIZE	조건	서류 /EDI	작 성 요 령	작 성 예
산업단지부호	AN	3	М	공통	○ 수출물품 제조장소의 산업단지부호 기재 (통계부호표 참조) - 산업단지부호가 아닌 경우 '999' 기재	- 246
④ 구매자	AN	26	M	공통	O 상업송품장(Invoice)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	- MADONA CO
- (구매자부호)	AN	13	М	공통	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해외거래처 부호를 기재 등록된 해외거래처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(세관장)에서 부여받아 기재	- CONTOSHIN12347
⑤ 신고번호					O 통관지 세관부호 및 과부호, 년도를 기재	
- 신고세관	AN	3	M	공통		- 010
- 신고과	AN	2	M	공통	- 신고과를 기재(통계부호표 참조) ※ 일련번호 및 체크디지트는 세관 접수시 부여하는 것으로 기재할 필요 없음	- 10
⑥ 신고일자	AN	8	M	공통	O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날짜 를 YYYMMDD(연월일)로 기재	- 20040312
⑦ 신고구분	AN	1	M	공통	O P/L, 서류제출, 반송 등 해당코드를 기재 (통계부호표 참조)	- H
⑧ C/S구분			Х	공통	O 세관기재(검사생략 등)란으로 기재 생략	
⑨ 거래구분	AN	2	M	공통	O 일반형태수출 등 해당코드를 기재(통계부 호표 참조)	- 11
⑩ 종류	AN	1	M	공통	O 일반·보세공장수출 등 해당코드를 기재(통 계부호표 참조)	- A
① 결제방법	AN	2	M	공통	O L/C, 단순송금 등 해당코드를 기재(통계부 호표 참조)	- TT
② 목적국	AN	7	M	서류	O 수출물품의 최종 도착국가에 대한 약어를	- JAPAN
- 코드	AN	2	M	공통	기재 O 해당 ISO 국가코드를 기재(통계부호표 참 조)	- JP
 ^③ 적재항	AN	12	M	서류	O 수출물품이 적재되는 항구·공항명을 기재	- 부산항
- 코드	AN	5	M	공통	(통계부호표 참조)	- PUS
④ 선박회사(또는 항공사)	AN	25	С	서류	O 당해 항차의 선박운항을 책임지는 선박회 사의 상호 또는 당해 항행의 항공기 운항	
- 코드	AN	4	С	공통	을 책임지는 항공사 상호 O 관세청에 등록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코드 기재	CO.LTD - HJSC, KE

항 목	TYPE	SIZE	조건	서류 /EDI	작 성 요 령	작 성 예
⑤ 선박명 (또는 항공편명)	AN	23	С	공통	○ 선박의 고유명칭(선박명을 23자리 이내의 영문으로 기재) ○ 국외로 출항하는 항공기의 운항 항공편명	- HANJIN SAVANNH - KE1098
⑥ 출항예정일자	N	8	С	서류	O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예정일을 기 재	- 20100101
⑦ 적재예정보세구 역	AN	8	С	서류	O 적재를 위한 장치장소의 보세구역 코드를 기재 *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 "세관부호+99999"를 기재	- 03012202 - 03099999
® 운송형태 - 운송수단 - 운송용기	AN AN	2 3	M M		○ 운송수단 코트를 기재(통계부호표 참조) ○ 운송용기 코드를 기재(통계부호표 참조)	 10BU (선박에 의한 벌크) 40UL (항공기에 의 한 ULD) 50ETC (우편물에 의한 기타용기)
⑤ 검사희망일	AN	8	M	공통	O 세관검사 희망일을 YYYYMMDD로 기재 ※ 수출신고시점에는 수출물품이 신고한 장 소에 장치되어 있어야함	- 20040304
② 물품소재지	AN	3	M	공통	O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 번호 앞 3자리를 기재	- 133
- 장치장소	AN	40	M	공통	○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 명칭(업체 상호)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기재하되, '시, 군, 구, 동, 면, 리'용어는 생략하고 기재 - 물품소재지가 보세구역일 경우 주소(구, 군단위까지) 및 보세구역명 기재(통계부호표 참조) - 보세구역이 아닐 경우 회사명과 주소 순으로 기재 ** 동일세관, 출장소 관할지 내 물품이 2곳이상 있을 경우 1건으로 신고 가능(대표소재지 기재) ** 물품이 보세구역이 있을 때에는 보세구역명을 반드시 기재	
② L/C번호	AN	20	С	공통	O 신용장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L/C번호를 기재하고, 그 외의 경우에는 은행참조번호 또는 계약서 번호를 기재	- LC620-96141
② 물품상태	AN	1	M	공통	O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기재	- N

항 목	TYPE	SIZE	조건	서류 /EDI	작 성 요 령	작 성 예
					(신품과 중고가 동시 신고된 경우 주요물품의 상태기준으로 기재) - 신품인 경우 : N, 중고품인 경우 : O	
② 사전임시개청 통보여부	AN	1	М	공통	○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신고서를 전송하는 경우 사전에 임시개청을 통보한 신고서 인지 아닌지 여부를 기재 - 임시개청 미통보(임시개청대상 아님): A - 임시개청 기통보(임시개청대상임): B	- A
② 반송사유	AN	2	С	공통	O「반송절차에 관한 고시」의 규정에 의한 반 송물품의 경우에는 반송사유부호를 기재 (통계부호표 참조)	- 11
⑤ 환급신청인	AN	1	С	공통	O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경우, 환급신청인을 해당하는 번호로 기재 - 수출대행자/수출화주 : 1, 제조자 : 2	- 1
간이환급	AN	2	M	공통	○ 수출신고에 의한 자동 간이정액환급 신청 여부를 기재 - 자동 간이정액환급신청 : AD - 미신청 : NO ※ 자동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 우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환급신청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자 이어야 하며 ② 거래구분은 일반형태 수출인 "11"이어야 하고 ③ 수출물품의 제조자 통관고유부호는 관세환 급시스템에 등록된 자동환급대상업체의 통 관고유부호와 일치	- AD
◎ 서류첨부여부	AN	1	М	EDI	O 각 란마다 모든 신고내역을 모델·규격별로 기재하지 않아 서류첨부가 필요한 건인지 여부를 기재	- Y(서류첨부 필요)
☞ 품명	AN	50	M	공통	 ○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-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10단위에 당해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재 -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○ 품목번호 중 최종 4단위에도 관세율표상에품명이 특게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 	

항 목	TYPE	SIZE	조건	서류 /EDI	작 성 요 령	작 성 예
					○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 반적인 품명 기재 ○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에는 「~PART」 또는 「PART FOR~」로 일괄 기재하고 구 체적인 품명은 모델·규격란에 기재 ○ 해외현지조립방식(Knock Down) 물품의 경우 "CKD" 또는 "SKD"라는 단어를 기 재한 후 품명을 기재 ※ 중고물품인 경우 품명 맨 앞에 "USED" 표기 ※ 반복수출입포장용기의 경우 품명 맨 앞에 "Returnable"표기	REFRIGERATOR - PART FOR CAR - "CKD"
② 거래품명	AN	50	M	공통	 ○ 실제 상거래시 상업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품명을 기재 ○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단순히 발음을 영자로 표기 ○ 학명은 CITES 해당 여부 등을 위해 확인 필요한 경우 기재 	- TAMAGOCHI
② 상표명	AN	30	M	공통	O 상표가 있는 경우 실재 사용하는 하나의 상표명을 기재 - 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공백을 제거하고 연 결하여 기재 ** 상표가 다른 경우 란을 달리하여 신고 ** 'BRAND'라는 단어는 기재하지 않음 O 상표가 없는 경우 'NO'를 기재	- CHRISTIANDIOR
2월 모델·규격 - 규격번호 - 모델·규격	N AN	2 400	CCC	EDI 공통	O 해당 품목의 세부모델 및 규격을 기재 - 모델·규격별 일련번호를 기재 - 세관 심사에 필요한 모델 및 규격을 상세히 기재 ※ 하나의 모델에 규격이 여러개인 경우 각규격별로 규격 앞에 모델명을 기재 O 모델명 기재방법 - 생산방식, 생산방법, 타입 등을 나타내는 부호임 -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 앞에 "MODEL"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영어 대문자로 모델명 기재	- 01 - MODEL: 335MH

항 목	TYPE	SIZE	조건	서류 /EDI	작 성 요 령	작 성 예
					 ○ 규격 기재방법 - 재질, 가공상태, 용도, 조립여부, 사이즈, 정격전압, 처리능력, 생산년도, 두께 등을 나타냄 - 여러 규격을 기재하는 경우 ';'로 구분하여 기재 	- W 400mm × L 1,400mm; UNFINISHED
					O 원·부자재의 단위실량(Raw Material) 등 환급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하 는 경우 그 앞에 " <rm>"라고 기재한 수 영어 대문자로 내역을 기재</rm>	
③ 성분	AN	70	С	공통	○ 품목 분류, 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 장확인대상물품, 관세환급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기재 - 농산물 혼합물 및 실·직물의 경우는 성분 및 함량을 모두 기재	
③ 수량	N	14	С	공통	O 당해 품목의 모델·규격별 수량을 기재 -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	- 200.0000
- 단위	AN	3	С	공통	- 실제 수량단위를 기재	
☞ 단가	N	18	С	공통	O 당해 품목의 모델·규격별 단가를 기재 - 소수점 이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	- 14.000000
③ 금액	N	16	С	공통	O 당해 품목의 모델·규격별 금액을 기재 -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※ 결제금액란의 통화종류 부호를 단가 및 금액항목 우측 ()안에 출력	- 2,800.0000
④ 세번부호	AN	10	M	공통	O 관세율표에 기재된 세 번을 10단위까지 기 재	- 8528.30-0000
③ 순중 량					O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을 기재	- 320.00

				서류		
항 목	TYPE	SIZE	조건	/EDI	작 성 요 령	작 성 예
					-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 재	
- 단위	AN	2	M	공통	O 단위는 'KG'으로 기재	
39 수량	N	10	С	공통	O HS별 표준수량·중량단위표에 게기된 단위 로 환산하여 기재	- 10
- 단위	AN	2	С	공통	- HS별 표준수량·중량단위표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하지 않음(중량만 기재) -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여 기재	
③ 신고가격	N	15	M	공통	○ FOB 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단위까지 기재 - 송품장상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가격으로 산정하여 기재(결제 조건이 CIF인 경우 운임,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) - 외국에서 수리·개조하기 위하여 반입된 선 박·항공기를 수리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리·개조로 인한 가득액을 기재 - 우리나라 선박·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후 반입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"0"을 기재 - 선박·항공기가 아닌 기타의 경우 "물품가 격+가득액"을 기재	10,000이고 운임이 1,000원, 보험료가 500원인 경우
◎ 차대번호	AN	20	С	EDI	O 중고차량(임시운행차량 포함)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차대번호를 기재	- KLAJA19YIBP8092 540
- 차대관리번호 (일련번호)	AN	3	С	EDI	- 차대번호의 일련번호를 기재	- 01
፡፡ 송품장 부호	AN	17	С	공통	○ 상업송품장 부호를 기재 - 수출물품에 원상태수출물품이 일부 포함되 어 수출되는 경우 맨 앞에 "72-"를 기재 한 후 송품장 부호를 기재	- 0000083964
③ 수입신고번호	AN	15	С	공통	O 재수출조건부 수입물품의 수출신고시 기재	- 31010-04-1490223
- 란번호	N	3	С	공통	- 해당 수입신고건의 란번호 기재	- 1
④ 원산지						
- 국가부호	AN	2	M	공통	O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기재	- CN
- 결정기준	AN	1	С	공통	O 원산지 결정방법 코드를 기재 - A : 완전생산기준	- A
	-					

항 목	TYPE	SIZE	조건	서류 /EDI	작 성 요 령	작 성 예
- 표시여부	AN	1	С	공통	- B: 부가가치기준(직접생산비기준) - C: 부가가치기준(타국원재료비공제기준) - D: 가공공정기준 - E: 조합기준 - 2: 세번변경기준(HS 2단위) - 4: 세번변경기준(HS 4단위) - 6: 세번변경기준(HS 6단위) - 8: 세번변경기준(HS 6단위에서 세분) O 원산지 표시여부를 기재 - N: 원산지 미표시 - Y: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 표시 - B: 포장에만 원산지 표시 - G: 현품에만 원산지 표시	- Y
④ 포장개수- 종류	N AN	6 2	M M		O 해당 물품의 외포장 개수를 기재 O 수출물품의 해당 포장종류 코드를 기재(통 계부호표 참조)	- 3 - RO
④ 수출요건확인- 일련번호- 구분	AN AN	2 1	CC		 ○ 수출요건확인 일련번호를 기재 ○ 수출요건별 구분코드를 기재 - A : 수출승인서 - B : 수출추천서 - C : 검사증 - D : 검역증 - E : 전략물자수출허가서 또는 상황허가서 	- 01 - D
- 요건승인번호	AN	20	С	공통	○ 타 법령에 의한 수출요건확인서의 허가 및 승인 번호 ○ 수출승인서 기재 가. 수출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 재 - 수출입구분 1자리 - 기관고유코드 3자리 - 산하기관코드 2자리 - 연도 2자리 - 일련번호 7자리 - 체크디지트 1자리 나.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승인면제물품인 경우	- 1127119900010686 (한국섬유직물수출 입조합 추천대상인 경우)
					다. 대외무역합녕장 수울증인면세울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의 해당 사유항목을 기재	

항 목	TYPE	SIZE	조건	서류 /EDI	작 성 요 령	작 성 예
					○ 전략물자수출허가서 기재(상황허가서 포함) 가. 허가구분자리(1자리) - A: 개별수출허가 - B: 일반포괄수출허가 - C: 특정포괄수출허가 - D: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- E: 전략물자비해당판정 나. 허가번호 및 판정번호(6자리)	
- 발급서류명	AN	35	С	공통	O 수출요건확인서류명 ※ 신고서 출력시 20자리까지 ()로 표시	- 문화재국외반출허가 서
- 발급일자	AN	8	С	EDI	O 수출요건확인서류 발급일자	- 2003-09-01
- 법령부호	AN	2	С	EDI	O 수출요건확인관련 법령부호(통계부호표 참 조) ※ 최대 8개까지 기재 가능하며, 수출신고서 에는 최초 입력한 4개만 출력	
⑤ *** *** *** *** *** *** *** *** *** *	N	11	М	공통	O 수출신고 물품의 총중량(용기 포함)을 기 재 -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 재	
- 단위	AN	2	M	서류	O 단위는 'KG'으로 기재	- KG
⊕ 총포장개수	N	6	М	공통	O 포장명세서상의 총 외포장 개수를 기재 ※ 운송명기(예 Pallet) 수량으로 기재하지 않음 ※ 수출신고서상 총포장개수의 단위는 1란의 포장종류 부호가 기재됨	- 300
⑤ 총신고가격	N	15	M	공통	O 원화 : 수출신고가격의 합계를 원단위까지 기재(원단위 이하는 절사)	- 4,000,000
	N	14	M	서류	O 미화 : 총신고가격을 미화(\$)로 환산하여 기재(\$ 이하는 반올림) ※ 환산율은 관세청 고시 수출환율을 적용	- 3,044
	N	12	С	공통	O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하된 경우 운임을 원 화로 기재	- 6,940,224
④ 보험료	N	12	С	공통	O 결제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보험료 를 원화로 기재	- 8,847,178
④ 결제금액					O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, 통화종류, 금액(실제 결제금액) 순으로 기 재(통계부호표 참조) - 인도조건은 INCOTERMS 2010코드를 기 재	

항 목	TYPE	SIZE	조건	서류 /EDI	작 성 요 령	작 성 예
- 인도조건	AN	3	M	공통	(INCOTERMS 2010 코드 이외에는 환산하여 기재)	- CIF
					EXW, FAS, FCA, FOB, CFR, CIF, CPT, CIP, DAT, DAP, DDP(11개임)	
- 통화 종류	AN	3	M	공통	-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를 기 재(다만,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 류가 없는 경우에는 "USD"로 기재)	- USD
- 결제금액	N	14	М	공통	-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금액 실제 결제금 액을 기재(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코 드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과 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 제1-4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환산 기재)	- 2,990.00
© 환 <u>율</u>	N	8	M	공통	O 해당일자에 해당하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재	- 1163.9100
④ 수입화물관리 번호	AN	18	С	공통	○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반송 물품의 경우에 당해 수입화물관리 번호를 기재 - 무적화물은 "NO"를 기재 - 화물관리번호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여 전송하되 수출신고서에는 최초 입력한 번호만 출력	
- 구분	AN	2	С	공통	 O 전량, 분할, 여러건 반송 등의 구분 기재 - A: 화물 전량을 반송 - B: 화물을 분할하여 반송 - C: 여러건의 화물을 동시에 반송 	- A
◎ 컨테이너번호- 적입여부	AN	1	M	공통	O 컨테이너 적입 및 컨테이너번호 확인 여부 - 'Y' 또는 'N'으로 기재	- Y
- 컨테이너번호	AN	11	С	공통	○ 수출신고시점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고 컨테이너번호가 확인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 - 최대 10개까지 기재 가능하며, 수출신고서에는 최초 입력한 번호만 출력 ※ 해상으로 수출 예정인 컨테이너 화물에한함.	- CKLU2005013

항 목	TYPE	SIZE	조건	서류 /EDI	작 성 요 령	작 성 예
◎ 신고인기재란	AN	500	С	공통	O 관제사 등 신고인이 수출신고시 세관에 제 공하는 정보 기재	- 수출자 : 제조/섬유, 의류
⑤ 세관기재란			Х		O 세관에서 사용하는 특기사항(예: 선적확인 사항 등) 기재란으로 신고시 기재할 필요 없음	
② 운송(신고)인 ○	AN	30	C	통	 ○ 보세운송대상물품(보세공장물품, 자유무역지역 등)인 경우 해당 보세운송신고인의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기재 ○ 일반 수출물품인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자등 당해 수출물품의 운송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기재 ※ 기재방법 - 운송(신고)인이 신고자인 경우: "신고자와 동일" - 운송(신고)인이 수출자인 경우: "수출자와 동일" - 운송(신고)인이 제조자인 경우: "제조자와 동일" - 운송(신고)인이 제조자인 경우: "제조자와 동일" - 운송(신고)인이 일반업체인 경우: 상호와 성명을 기재 	
⑤ 기간	AN	16	С	공통	○ 보세운송대상물품인 경우 보세운송신고수 리일자 및 종료일자를 YYYY/MM/DD로 기재 ○ 일반 수출물품인 경우 운송 예정기간을 기 재	2004/01/30
④ 적재의무기간			Х		O 신고수리일로부터 기산된 최초 적재의무기 한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신 고인이 기재할 필요 없음	- 2003/12/17
<u></u> 등 담당자			Х		O 세관의 접수 담당자	- 990101 (홍길동)
ⓑ 신고수리일자			Х		O 세관에서 신고수리한 일자가 기재되므로 신고시 기재할 필요 없음	- 2003/11/17